



수출채권매입 거래약정서

년 월 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귀중

수출자 :

인

주 소 :

인감
대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하 "기본약관")을 수령하였으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함.

인

위 수출자(이하 "수출자"라 함)와 위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은 동 약정서상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조 적용범위

특정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상품 선적과 함께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발송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수출대금을 수출상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수입상이 직접 입금하는 수출거래(Open Account Transaction, 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수출자가 해당 수입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외화표시 수출대금채권(이하 수출채권이라 합니다.)을 은행이 매입하는 경우 동 약정서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2조 수출채권의 양도

- 수출자는 은행에 대하여 수출채권 매입의뢰시 은행 소정양식의 양도통지서를 수출채권의 지급의무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합니다.)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출자는 해당 양도통지서 사본 및 지급의무자의 동의서(은행 소정양식) 및 수출채권 매입거래와 관련한 선적서류(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및 수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사본을 수출자의 책임하에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출자는 수출채권 매입의뢰시 은행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매입일

1영업일 전까지 은행에 제출합니다. 매입신청서가 일단 은행에 접수되면 취소가 불가능하며 수출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본 약정의 목적에 따라 수출자는 은행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을 이용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의 매입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전자문서교환방식의 접수도 본 약정 상의 매입신청으로 간주됩니다.

3. 은행은 수출자로부터 매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신청서의 수락여부를 결정합니다. 은행이 매입신청서에 따라 수출채권을 매입하기로 한 경우, 은행은 해당 매입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수출자에게 본 사실을 통지합니다. 매입일 11시 30분까지 은행의 통지가 없는 경우, 매입 요청이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입신청서에 따라 은행이 매입하기로 결정한 수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출자는 매입일 당일 해당 수출채권을 은행에 반드시 양도해야 하며 은행은 매입일 당일 해당 수출채권을 양수하여야 합니다.
4. 은행이 매입신청을 수락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채권의 할인 금액을 수출자에게 소구조건으로 지급하고, 이로써 해당 매입일자로 수출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수출채권과 관련하여 어음(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수출자는 상기 선적 서류 제출에 더하여 동 어음을 은행 앞으로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3조 진술 및 보장

수출자는 은행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사실임을 진술·보장합니다.

1. 수출자는 수입자와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계약서가 유효함을 인정하며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수출채권의 금액 및 대금결제 조건 등 수출자가 제출한 동 약정 제 2 조에 의거 은행에 제출하는 매입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수출계약상의 거래조건과 동일하며, 본 매입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제출한 수출환어음 및 모든 선적서류(해당 하는 경우)는 진정하고 완전하며 유효합니다.
3. 수출자는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본 수출채권의 매입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은행에 즉시 제공합니다.
4. 수출자는 수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수출채권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 권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5. 수출자는 은행이 수출채권의 양수인 및 관련서류의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6. 수출자는 은행에 수출채권을 양도한 이후에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는 당해 수출채권의 어떠한 조건 변경을 하거나 변경요청에 대한 동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7. 수출자는 은행에 양도한 수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입자의 수출채권대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합니다.

8. 이 약정에 따른 수출채권의 양도는 담보목적의 양도나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매매이며, 양도인은 양도된 양도대상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9. 이 약정에 따른 수출채권의 매입가격은 정당하게 산출되었고, 이 약정에 따른 수출채권의 매입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하여 진정한 매매로 취급됩니다.
10. 수입자의 최근 신용상태악화등 수출채권 매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으며, 추후 신용상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은행에 즉시 통지합니다.

제 4 조 수출채권 대금의 회수

1. 수출자는 수출채권 만기일에 지급의무자로 하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을 은행에 직접 또는 은행의 수출자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수입자가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채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은 그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최대한 은행에게 협력하기로 합니다.
2. 다만,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지급의무자는 타 은행에 개설된 수출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채권과 관련해서 수출자는 금원을 수령한 후 1영업일 이내에 이를 은행에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수출자는 은행으로 이와 같은 지급이 이루어 질 때까지, 은행을 대신하여 동 금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출채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 1) 수출자에 대하여 기본약관 제 7 조 제 1 항(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의 당해 수출채권
 - 2) 수출채권 만기일로부터 은행이 정한 기일까지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수출채권
 - 3) 지급의무자가 만기일 이전이라도 수출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의 당해 수출채권
4. 다음 각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수출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수출채권을 환매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 3 조에 따른 진술이 허위이거나 보장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 1 조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 경우
 - 3) 수출자의 수출계약 불이행 또는 상업분쟁으로 인하여 수출채권대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상계, 항변의 주장이 있는 경우
 - 4) 수출채권의 적법한 양도를 수입자가 부인하거나 법적, 제도적 제한에 의하여 양도에 의거한 정상적인 대금 청구가 불가할 경우

5. 수출자에 대하여 기본약관 제 7 조 제 3 항 및 4 항(서면 독촉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은행의 서면독촉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한이 경과하면 모든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6. 동 조 제 3 항 및 제 4 항과 관련하여 수출자는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 전날까지 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부도처리가 환가료 징수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도처리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기산합니다.
7. 동 조 제 3 항 및 제 4 항과 관련하여 수출자는 매입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매입대금을 상환하며, 은행은 수출자가 매입대금과 이에 부수하는 손해배상금, 수수료, 비용 등을 변제할 때까지 수출환어음 및 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제 5 조 추심대리인

은행은 수출자의 수출채권 대한 지급이 은행 또는 타은행에 개설된 수출자의 계좌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자를 추심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수출자의 비용으로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니다.

1. 매입된 수출채권의 관리 및 추심에 들이는 시간, 성의, 숙련도, 성실도가 최소한 해당 수출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유한 수출채권을 관리 및 추심하는데 들이는 시간, 성의, 숙련도, 성실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2. 매입된 수출채권에 대해 지급의무자가 수취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고, 은행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될 때까지 은행을 위하여 해당 금액을 보관합니다. 양도 통지가 발송되었고 그 통지에 지급의무자가 은행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입된 수출채권에 대해 지급의무자가 은행의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3. 수취계좌로 지급되어야 할 매입된 수출채권의 금액이 만기일까지 전액 해당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 은행에 즉시 이를 통지합니다.
4. 지급의무자로부터 수령한 자금이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구분되지 않은 채로 입금된 경우 만기 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매입된 수출채권 관련 채무 이행을 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수출자는 은행에 매입된 매출채권과 관련된 지급액의 수령을 통지하고 해당 금액을 1영업일 이내 은행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며, 입금이 지체된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이자 등

수출대금이 수출채권 만기일에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출자는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 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입금지연이자 또는 부도이자를 지급합니다.

1. 수출자는 매입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수수료, 전신료, 지연배상금, 기타 비용 및 은행 또는 환거래은행 등의 권리행사, 권리보전,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비용과 손해를

부담하며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수출자가 은행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수출자 이외의 자가 제1항의 이자, 할인료, 수수료,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출자의 비용으로 은행이 수출자 이외의 부담자에게 청구하였으나 입금되지 아니하여 수출자에게 청구한 때는 수출자가 이를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은행이 추후 수출자 이외의 부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반환합니다.
3. 만기일 후에 입금이 이루어진 경우 수출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은행의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내에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자, 할인료, 지연이자, 지연배상금, 수수료, 비용 등의 요율, 계산방법 및 환율과 그 적용방법 등은 은행이 정하여 고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지급거절 등에 따른 법적비용, 대체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등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항목은 고시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7 조 지급 등의 연기

1. 수출대금의 지급의무자가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수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지급의 연기를 승낙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은행은 수출자의 동의없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은행에 생기는 손해는 은행의 고의나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제8조 제재(Sanctions)

1. 진술

수출자는 다음의 내용을 진술하고 확인합니다.

1) 수출자 · 수출자의 자회사 · 이들의 이사 등 임직원 · 대리인 · 계열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 통제하고 있는 개인 · 단체(개인, 단체를 포괄하여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A.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국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연합, 영국 재무부, 홍콩 금융감독청 (HKMA)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치 또는 강제한 제재("제재")의 대상.

B.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배하는 영토에(서) 위치하거나, 조직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음.

2) 개별 신용장(이하 본 제재 관련 조항에서 청구보증서, 보증신용장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수입, 수출 또는 업무에 필요한 면허·허가를 취득하였고, 수출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관할과 관련된, 또는 은행에 개설을 의뢰하는 신용장 및 선적·금융 등 신용장에 기재된 주요 사항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을 준수합니다.

2. 면제 및 면책

수출자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1) 은행·HSBC Holdings plc·그 계열사·자회사(이들을 포괄하여 "HSBC 그룹"), HSBC 그룹의 서비스공급자는 제재·자금세탁·테러목적 자금조달·뇌물수수·부패·탈세 방지 등과 관련된 각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은행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또는 다른 그룹 구성원이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제재 등에 관련된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이하 "준법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다른 HSBC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준법 조치는 지급·교신·지시의 확인 및 조사, 법적 주체가 제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제재를 따르지 않는 신용장 발행·지급·갱신·확장·이전 및 거래·지시의 이행 거부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 3) 은행·은행에 대한 서비스공급자·HSBC 그룹 구성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취하는 준법 조치와 관련하여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손해·지연 또는 본 약정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은행 또는 HSBC 그룹 구성원은 관련 준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4) 수출자는 고의, 사실과 다른 진술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준법 조치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비용·손해·제3자의 청구·조치·소송·책임(이들을 포괄하여 "손실")에 대하여 은행을 면책하고 보상합니다.

제9 조 서류제출

수출자는 은행이 법령 등에 의한 상당한 사유로 본 약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한 허가서, 추천서, 증명서, 신고서 기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출합니다.

제 10조 적용기간

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나 수출자는 이 약정을 서면 합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는 이 약정이 계속 적용됩니다.